

장학금 지급규정

학점은행제수강학생장학금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디지털서울종합평생교육원(이하 “교육원”이라 한다)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2016.5.25. 개정)

제2조(적용범위) ① 교육원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②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수강학생에 한한다.

제2장 장학위원회

제3조(설치와 구성) ①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 방침과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은 전임교수, 교무지원팀장, 학사관리팀장, 온라인상담팀장 및 원장이 지정하는 2인 이상 5인 이하의 교직원으로 한다. (2016.5.25. 개정)

④ 간사는 학사관리팀장으로 한다.

제4조(기능) 장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장학금에 관한 기본정책
2. 장학금에 관하여 원장이 의뢰한 사항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장학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원내 장학금) ① 원내 장학금은 학기별 각 기수 단위로 지급한다.

② 원내 장학금은 신입수강생장학금, 학업성적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으로 한다.

③ 신입수강생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장학구분	선정기준	장학혜택	제출서류
1. 성적우수 장학금	해당학기 7과목 이상 수강자 중 평균평점 최상위	30%	장학수기(사진포함), 개인정보 활용동의 서, 통장사본
	해당학기 7과목 이상 수강자 중 평균평점 상위 석차 2~5등	20%	
2. 수업참여도 우수 장학금	유선전화 및 게시판 참여로 수업에 적극 참여하 거나 본 교육원에 유용한 제안을 한 수강자	30%~40%	교육원에서 선발 후 개별 및 전체 공지, 통장사본

장학구분	선정기준	장학혜택	제출서류
3. 과제제출 참여도 우수 장학금	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판단되는 학습자(제일 빨리 과제를 제출한 학습자중 최소 8점 이상 득점한 학습자 과목별 2명)	상품권	
4. 생활지원 장학금	○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가정환경이 곤란한 자나 천재지변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자와 그 자녀 ○ 교정보호시설(소년원·교도소·치료감호소) 수용자로 수강신청일 현재 수용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자 ○ 사회복지시설·청소년보호시설·아동복지시설·소년법상 소년보호시설 퇴소자로 원서접수일 현재 퇴소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	30%	수급자 증명서 사본
5. 장애우복지 장학금	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	50%	장애인복지카드
6. 보훈 및 새터민장학	보훈대상자, 배우자 및 그 직계 자녀	100% (교육원·보훈처 각 50%)	1. 수강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2.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
	새터민(북한이탈주민) 및 그 직계자녀	100% (교육원·하나원 각 50%)	1.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2. 학력인정확인서
7. 취업지원 장학금	취업준비생 학기종강 후 취업에 성공한 학습자	상품권(추첨) 또는 취업지원금 지급	교직원 추천서, 재직증명서
8. 사회봉사 아이디어 장학금	사회봉사활동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·시상	최대30만원	교육원에서 선발 후 개별 및 전체공지
9. 협약기관 장학금	우리 교육원과 상호협약체결 한 각 기관의 추천이 있는 학습자	협약체결 내용에 따름	
10. 멘토 장학금	우리교육원의 개발, 운영 교강사 및 조교의 추천이 있는 학습자	30%	
11. 평생학습 장학금	사복/보육/평생교육사 자격증 중 1개이상 취득 후 추가 자격증 과정 진행시	30%	자격증사본
12. 친구추천할인	친구추천 인원내에 따라서 차등 지급	상품권	
13. 인재 개발금 장학금	학습설계실 교직원 추천	30%	

④ 학업성적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종 별	대 상	지급 내용	비고
성적 최우수	해당학기 8과목 이상 수강자 중에서 최상위득점자	30%	
성적 우수	해당학기 8과목 이상 수강자 중에서 차상위득점자	20%	

⑤ 특별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로장학(교육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원장이 인정한 자) : 50%~100%
2. 특기장학(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공모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수강자) : 100%
3. 수업참여도우수장학(해당 수업과정에서 참여실적 우수자) : 30%~40%
4. 특별배정장학 : 장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: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면제

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입수강생장학금의 다음 학기 계속지급 여부는 원장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결정한다.

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종류별 성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제7조 제3항 제1호 내지 7호, 제11호 내지 제13호 : 직전학기 평균 점수 80점 이상
2. 제7조 제3항 제8호 내지 제10호 : 직전학기 평균점수 70점 이상

제3장 장학금의 지급 및 그 제한

제7조(사무관장) 장학금의 지급사무는 학사관리팀으로 한다. 다만, 그 자금의 관리는 행정관리팀에서 행한다.(2016.5.25. 개정)

제8조(수혜기간)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학기에 한한다.

제9조(지급) 장학금의 지급은 원칙적으로 매학기 각 기수별 등록기간 내에 지급한다.

제10조(장학금 지급의 중지 및 환수) 장학생으로 선정된 수강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 학기의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, 선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조치 한다.

1. 교육원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
2. 제적(미등록제적, 자퇴제적, 학사경고제적)된 자
3. 기타 장학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

제11조(이중지급 금지)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지하며, 1인이 2개 이상의 장학금 지급대상이 된 때에는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.

제12조(장학생의 자격상실) 장학생으로 선정된 수강학생이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의 수혜자격을 상실한다.

제13조(시행세칙)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